
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9. 14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
가. 허가 번호 : 제2015 - 03호
나. 허가연월일 : 2015. 09. 09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진출입로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인천 서구 금곡동 684-34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가. 면 적 : 19m²
나. 기 간 : 2015. 10. 01. ~ 2016. 09. 30. (1년)
5. 점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
가. 성 명 : 양***외 1인
나. 주 소 : 인천 서구 금곡동 ****-**

